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7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박지혜·서영교·이용우
이병진·이주희·위성곤
백승아·민형배·허영
이광희·윤건영·이재강
의원(12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2030년에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라.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매년 6월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90일 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한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으로, “협정 제4조”를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

스 순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1. 2030년까지 35퍼센트 이상 감축
2. 2035년까지 65퍼센트 이상 감축
3. 2040년까지 85퍼센트 이상 감축
4. 2045년까지 95퍼센트 이상 감축

이 경우 연도별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매년 6월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90일 내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재설정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17. (생 략) <u><신 설></u>	1. ~ 17. (현행과 같음) <u>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u> <u>기온의 상승을 국제사회가</u> <u>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u> <u>제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잔</u> <u>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5년마다 산출한 것을 말</u> <u>한다.</u>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 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2050 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② (생략)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u>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u> (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u>“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u> 1. <u>2030년까지 35퍼센트 이상 감축</u> 2. <u>2035년까지 65퍼센트 이상 감축</u> 3. <u>2040년까지 85퍼센트 이상 감축</u> 4. <u>2045년까지 95퍼센트 이상 감축</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0년을</u> 계획기간으로 하는 <u>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u>----- ----- --. <u>이 경우 연도별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u>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u>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u>----- -----
--	---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
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
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
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
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
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
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연도별감
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
검하고, 매년 6월말까지 그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

<u>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u> <u>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u> <u>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u> <u>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 ⑤ (생 략)	<u>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u> <u>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u> <u>서가 공개된 날부터 90일 내에</u> <u>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u> <u>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u> <u>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u> <u>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u> <u>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